

【 1 】 제29회의회(臨時會) 회기결정의건

제의년월일 : 1994. 10. 5

제 의 자 : 의 장

제안이유

제29회 임시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건심사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기 위함임.

주요골자

회 기 : 1994. 10. 8 ~ 10. 19 (12일간)

【 2 】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

발의년월일 : 1994. 9. 27.

발 의 자 : 김재현 의원외 1인

제안이유

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현행조례 중 일부 문구 및 내용이 부합되지 않는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.

주요골자

-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의 사무가 2 이상의 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함. (안 제5조)
-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중 국가사무와 도의 사무에 대하여 도 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는 제외함 (안 제6조)

양주군조례 제 호

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

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항에 있어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.

제6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도의 사무에 대하여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는 제외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무대비표

현 행	기 정 안
<p>제5조(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) ①(생략)</p> <p><u>②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항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.</u></p>	<p>제5조(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) ①(현행과 같음)</p> <p><u>②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2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항에 있어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.</u></p>
<p>제6조(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) ①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.</p>	<p>제6조(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) ①----- ----- ----- . 이 경우</p>

현 행	개 정 안
(신 설)	<p><u>지방자치단체가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</u></p> <p><u>와 도의 사무에 대하여 도 의회가 직접 감사</u></p> <p><u>하기로 한 사무는 제외한다.</u></p>

【 3 】 양주군증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

제출년월일 : 1994. 9. 7.

제출자 : 양 주 군 수

제안이유

1993. 12. 27(법률 제4628호) 부동산증개업법의 개정으로 증개업자와 증개의뢰인, 증개업자와 제3자간의 분쟁을 심사, 조정하여 모든 군민이 부동산증개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 동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주요골자

○ 증개업법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(안 제2조)

- 부동산증개업무와 관련된 분쟁을 심사, 조정

○ 위원회 구성 : 7인 이내 (안 제3조)

- 위원장 : 군수

- 부위원장 : 위원증에서 호선

- 위원 : 부동산증개업 및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